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2010년 3월 pp.67~95
한국세무학회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석명복** · 서희열***

<요 약>

세계 각국은 국제 비즈니스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촉진하고, 불리한 세제를 변경하는 등 독자적인 투자유인과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 상호간 조세제도의 불일치(Inconsistencies)와 상충(Tax-Law Conflicts)을 낳았고, 이러한 불일치 등은 합법적인 절세기회로 인식되어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Cross-Border Tax Arbitrage)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국가별로 고유한 정책목적과 다원화된 법제도 환경 때문에 모든 국가의 조세제도를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세제도의 불일치를 이용한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합법적인 조세차익거래에 고도의 금융기법이 개입되면서 조세 회피거래와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현상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한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의 물줄기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오염된 국제거래에 대하여 세제상 규제조치를 취하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국제거래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합법적 절세행위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기준의 마련과 조세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국이 다른 국가보다 가장 선도적으로 조세회피거래를 직접규제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국의 조세차익거래 규제제도와 주요 조세회피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1992년에 국제 영구채권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지난 2004년에는 조세차익거래와 조세회피를 통제하기 위하여 재정법에 공개의무규정을 신설하고, 2005년도에는 보다 강화된 재정법 No.2를 시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오·남용적 절세계획을 규제하기 위한 공동국제조세회피정보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를 설립하여 회원국 간 국제적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국가단위의 세법적 규제와 간섭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 본 논문은 석명복의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국가 간 조세 차익거래에 관한 연구」, 2009. 2.)의 주요 부분을 정리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 세무사, (주)하이플러스카드, 세무학박사, smb1223@hipluscard.co.kr, 주저자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suhhy810@hanmail.net, 교신저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도 합리적으로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과 실무적 측면, 그리고 행정절차 측면에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하여 영국의 규제제도와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조세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발전된 조세차익거래 규제제도가 지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조세차익거래, 조세회피, 조세경감, 조세차익거래규제기준

I. 서 론

국가 간 자본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투자유인을 목적으로 세금을 우대해주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납세자들은 전략적인 세무계획이라는 명분으로 조세경감행위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가 간 자본거래를 바탕으로 한 탈세 및 의도적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공동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세경감행위가 문제가 된 이유는 세계 각국이 국제 비즈니스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촉진하고, 불리한 세제를 변경하는 등 개별국가들의 독자적인 투자유인과 규제완화 정책이 국가 상호간 조세제도의 불일치(Inconsistencies)와 상충(Tax-Law Conflicts)을 낳았고, 이러한 불일치 등은 합법적인 절세기회로 인식되어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Cross-Border Tax Arbitrage)¹⁾를 창출하고 활성화시키는 원인²⁾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세계 각국은 국가별로 고유한 정책목적과 다원화된 법제도 환경 때문에 모든 국가의 조세제도를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세제도의 불일치를 이용한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합법적인 조세차익거래에 고도의 금융기법이 개입되면서 조세회피거래와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현상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한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의 물줄기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오염된 국제거래에 대하여 세제상 규제조치를 취하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국제거래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합

1) 학자마다 “세금재정거래” 또는 “차익거래”라고도 하나, 실무에서는 “조세차익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차익거래”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국가 상호간의 거래이므로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로 지칭한다.

2) Diane M. Ring, “One Nation Among Many : Policy Implications of Cross-Border Tax Arbitrage”,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44. 2002. p.81. 여기서 Ring은 “납세자들이 거래자체에는 국경이 없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익거래의 가능성을 가진 조세국경이 있다는 것을 체험함에 따라 기술발전과 세계화가 차익거래에 대한 접근기회를 증가시킨다고” Michael Danilack(미국세청 국제담당법무부실장)이 언급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

법적 절세행위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기준의 마련과 조세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조세차익거래 규제제도를 소개하고, 주요 조세회피에 관한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조세회피거래를 규제하는 편이다. 1992년에 국제 영구채권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지난 2004년에는 조세차익거래와 조세회피를 통제하기 위하여 재정법에 공개의무규정을 신설하고, 2005년도에는 보다 강화된 재정법 No.2를 시행한 바 있다.³⁾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오·남용적 절세계획을 규제하기 위한 공동국제조세회피정보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⁴⁾를 설립하여 회원국 간 국제적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국가단위의 세법적 규제와 간섭이 확산 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조세차익거래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영국의 조세차익거래 규제제도와 조세회피와 관련된 조세차익거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세차익거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조세차익거래의 개념

가. 차익거래

일반적으로 차익거래(Arbitrage)는 서로 다른 자산의 매입 포지션(Long Position)과 매도 포지션(Short Position)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가격차이를 통해 위험 없이 보다 높은 이익을 얻는 것의 의미하며, 이를 재정거래(裁定去來)라고도 한다(박정식 1988, 240).

그리고 무위험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적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재무적 차익거래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의 이자율로 차입하여 15%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경우 5%의 레버리지 차익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오 윤(2003)의 일반적인 금융이론에 의하면 이와 같은 차익거래의 기회는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나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2004년에는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5년에는 소득세,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등으로 확대되었다.

4) OECD내에 설치된 태스크포스팀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특별히 조직되었다.

나. 조세차익거래

조세차익거래의 정의는 다양하다. Scholes & Wolfson(1992)은 “조세차익거래도 다른 차익거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산을 매입하고(Long Position) 다른 자산을 매도(Short Position)함으로써 순투자는 한 푼도 안들이고 확실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준규·김갑순(2008)은 조세차익거래를 “일반적으로 세법상 비과세·감면 등으로 차별과세되거나 세율차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특성을 이용하여, 순투자비용 없이 재무적 차익거래와 마찬가지로 조세상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산을 동시에 매도 및 매입을 함으로써 확정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조세차익거래는 시장의 마찰(Market Frictions)과 세법의 제약(Tax Rule Restrictions)이라는 제약조건 아래서 성립하게 되지만, 여전히 조세차익거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투자 및 재무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현실의 제약조건들 보다 조세차익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시장마찰과 세법제약은 차익거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 이들은 기능면에서 상호 대체적이기도 하다(이준규·김갑순 2008, 208). 즉, 시장마찰이 심하여 차익거래를 위한 비용이 크다면 세법상의 제약은 최소한으로 필요하며, 반대로 시장마찰이 감소하면 더 많은 세법제약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비용은 시장의 불완전성 및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의미한다.

만일 납세자들의 조세차익거래 활용이 지나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면, 정부는 세법상의 규제를 통해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세차익거래 때문에 과도한 세수감소로 과세기반이 침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

조세차익거래가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국경을 넘어 국가 상호 간에 거래될 때에는 이를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Cross-Border Tax Arbitrage)라고 한다. 이는 국내 차익거래와 달리 납세자가 국경을 넘어(Cross-Border) 서로 다른 사법제도를 가진 2개국의 상이한 조세제도를 이용하는 계약을 통하여 일방 또는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차익거래(Tax Arbitrage)행위로 정의되고 있다(Ring 2002, 80).

5) M.S. Scholes and M.A. Wolfso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1992, p.1 및 정운오, “Scholes and Wolfson의 패러다임에서의 세금재정”, 『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1997, 133면에서 재인용함, 즉 일반적으로 시장마찰의 존재는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며, 거래비용이란 경제시스템 운용비용으로 정보비대칭, 도덕적해이 등에 대비한 탐색비용, 관리감독비용, 의사결정비용 등 거래완성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을 말한다. 반면 세법상 제약은 납세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법령제정 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는 거래나 사업체의 구성이 국내 조세차익거래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2개국 또는 그 이상 국가와의 조세제도 차이를 통해 얻는 이익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국가 상호간의 조세제도 불일치(Inconsistence)는 세금을 고려한 차익거래 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납세자는 상대국 조세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국가 간 차익거래를 이용한 절세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이중국적을 가진 다국적기업은 항상 관할 국이 복수이므로 소재국의 세법환경에 따라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납세자들은 자국기업의 이익을 전제로 차익거래를 하며, 세금효과를 더 높이기 위하여 거래구조에 조세피난처를 결합하거나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등 복잡하지만 고도의 금융기법을 통해 공격적이고 다양하게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를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차익거래는 의도적인 조세회피거래와 같이 조세제도의 남용(Abuse)이라는 논란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조세차익거래를 규제할 경우에는 조세조약이나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규제근거 및 규제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2. 조세차익거래와 조세회피거래의 비교

조세차익거래와 조세회피거래는 거래목적에서 우선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은 조세가 국가 재정의 주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탈세거래 및 조세회피거래에 대하여는 법을 위반하고 사회적으로도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특별하게 규제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는 해당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기업 간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국가 간의 분쟁을 초래하는 등의 국제조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관련법률 및 조세조약 등을 통해 조세회피행위를 적극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는 기본적인 거래목적이 국가별로 고유한 정책목적과 다원화된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래 당사국간의 세법상 차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법과 제도에 충실하게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납세자들은 조세차익거래를 이용하면서 절세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악의적인 조세피난처 거래를 결합하기도 하고, 세 부담이 없거나 적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이용(Treaty Shopping)하여 공격적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때로는 경제적인 실체가 없이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만을 운용함으로써 조세차익거래를 통한 회피성 조세

경감을 의도적으로 확대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국제조세회피의 경우와 달리 조세차익거래는 거래 상대국에서 세수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국가의 산업 및 조세정책상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큰 영향은 없다고 보며, 거래기업 간 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나 소외된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차익거래를 규제하지 않는 한 국제조세의 분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 보면, 조세차익거래의 내면에는 합법성과 회피성의 이중적 성격이 혼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조세법제도를 남용할 수도 있는 여건이 충분히 내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부 조세차익거래는 통상의 조세회피거래와 명확한 경계 및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OECD를 비롯한 각국의 세무당국은 공격적 절세전략(Aggressive Tax Planning : ATP)에 대하여 집중적인 규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세계화되고 외환자유화 및 금융기법이 발달됨에 따라 법률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조세회피행위가 조직화, 지능화, 고도화되어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위배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 행위로서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고, 세수손실을 초래하여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기반을 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공식 언급을 하였다(국세청 보도자료 2006.3.17, 1).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격적 절세전략에 대한 입장은 조세의 회피와 포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공격적 절세전략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의 세 부담 격차가 크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은 공격적 절세전략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반면에 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은 공격적 절세전략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공격적 절세전략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지나친 조세경쟁을 유발하고 과세기반을 잠식한다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안종석 2006, 4).

국제거래에서의 조세회피 사례는 주로 이전가격 조작, 조세피난처 이용, 조세조약 남용, 신탁재단 이용, 소득종류 변경 등 여러 가지 유형을 복합하거나 병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3. 조세차익거래의 양면성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는 국가 간에 거래를 하는 동기와 목적에서 위법성이 내포된 의문스러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히 양국 간 세법상의 차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세절약행위로 보아야 한다(Ring 2002, 86). 그러나 조세차익거래도 자체적으로 합법성과 회피성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악의적인 행위와 조세절약을 위한

합리적인 세무계획으로서의 선의적인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⁶⁾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을 해보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⁷⁾

경제활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구분과 판단기준의 설정이 없이 포괄적으로 조세회피거래에 대하여 정책적인 규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세차익거래를 조세회피거래로 판단하여 세법적 규제를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의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경제개방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 상거래 분야에서 조세회피행위와 조세절약행위의 경계선이 불명확할 경우에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에 따르는 마찰이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나아가서는 국제분쟁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조세경감행위의 유형별 상호관계를 요약해 보면 <표 1>과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

<표 1> 조세경감행위의 구분

조 세 경 감 행 위		
탈 세 (Tax Evasion)	회 피 (Tax Avoidance)	절 세 (Tax Saving)
공격적 절세전략 (Aggressive Tax Planning)		
	조세차익거래 (Tax Arbitrage)	

4.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의 유형

국경을 넘어 이루어진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 유형 중에서 조세차익거래의 대표적 유형 4가지를 Ring(2002, 90-100)의 연구에서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중복소유에 의한 이중상각 리스

가장 일반적인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 유형으로는 중복소유에 의한 이중상각 리스(Double-Dip Lease)를 들 수 있다. 본 유형의 요점은 차익거래 핵심이 되는 세법상 자산소유에 관한 인정

6) 여기서 Ring은 선의거래와 악의거래를 구분하는 것을 선긋기(Line Drawing)라 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동등한 조세편익을 얻는 대안거래, 다른 국가의 비조세편익에 대한 무관심, 다른 나라에서 세율과 같은 수단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것 등이 조세차익거래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Ring, 2002, 126).

7) 영국에서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계개혁(2004, 제정법)으로 특정 세무거래의 공개(Disclosure)제도와 조세회피성 거래의 유형과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기준이 서로 다른데서 연유한다. 즉, 소유권 인식규정이 다르므로 인해 하나의 자산에 대해 2개의 과세주권이 각각 자국의 납세자(임대인 또는 임차인)를 자산의 소유자로 대우함으로써 양국 납세자는 중복소유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감가상각(가속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국가 간 리스거래가 효율적인 세무계획(Efficient Tax Planning)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차이거래의 근거는 국가별로 고유한 법형식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리스거래 자산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미국과 영국 같은 관습법 국가는 전통적으로 법의 형식적 기준을 중시하고,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대륙법 국가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기 때문에 두 나라간의 거래는 세법상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양국의 거래당사자는 세법상 중복소유에도 불구하고 각각 감가상각의 권한(Tax Title)을 갖게 되고, 이로써 조세차익거래는 합법성이 담보되는 것이다.⁸⁾ 결국 국가 간 리스에 의한 이익창출의 요인은 바로 이와 같은 법형식의 차이에 따른 가속 감가상각과 세법이 허용하는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복소유 리스는 법인소득세 절감 이익 외에도 거래구조 설계와 관련한 금융편익 및 국가별 세법에 따른 원천세 이득 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⁹⁾

예를 들어, 프랑스 항공회사가 회사자산인 항공기를 미국항공사에 리스(임대)해준다고 가정할 때, 법형식이 다른 프랑스와 미국은 자국의 세법상 각각의 항공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프랑스와 미국의 기업은 하나의 항공기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각각 감가상각을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향유하게 된다. 이로써 합법적인 차이거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일부는 세금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차이거래 구조에 각종 금융대출 및 투자를 혼합하여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그로 하여금 종합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거래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제조세리스(Cross-Border Tax Lease)라 하여 198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운용되어 왔으며, 이와 동일한 유형

8) 통상적으로 국가 간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구조를 금융리스(finance lease)형태로 갖게 된다. 이때 재무회계는 금융리스를 자산의 매입으로 처리하지만, 세무회계는 조세 관할 국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즉,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들은 대체로 과세소득의 계산을 납세자의 회계이익을 근거로 계산하므로 세무회계적으로도 금융리스를 자산의 매입으로 간주한다.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세무상으로도 자산의 매입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곧 임대인이 자산소유에 따른 감가상각 및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들은 세법상 거래의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금융리스를 자산의 매입이 아니라 운용리스(operating lease)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는 곧 임대인이 리스자산의 소유자가 되어 자산소유로 인한 조세혜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복소유에 의한 이중상각 리스의 차이거래가 성립되는 근거를 찾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차익거래가 합법적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거래당사자가 동일한 조세 관할국에 거주한다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은 당연하다(정운오·고종권, 2007, 84).

9) 이는 거래구조가 레버리지리스이므로 투자자들의 자금투입과 활용에 수반하여 금융 손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의 조세차익거래로 국내에서도 H공사 등에서 실행된 사례가 있다. 국제조세리스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나. 이중국적기업

본 차익거래 유형은 세법규정상 거주기준을 적용하는 2개국 이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 즉, 이중국적기업(Dual Resident Companys : DRC)이 각종 세법상의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이다(Ring 2002, 95). 다시 말해 이중국적기업(DRC)은 차입금으로 타국의 자회사를 인수하여 차입금이자 비용공제를 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분담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단일기업의 손실 즉, 이중국적기업(DRC)의 손실은 소득의 감소를 2회 초과하게 되어 세금을 두 번이나 경감시키는 중복공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세계 각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판단기준으로 거주성의 개념을 공히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대부분은 고유정책상 이를 공통된 방식이 아닌 상이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가령, A국은 다국적기업의 거주성을 회사 본사가 설립된 곳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B국에서는 기업을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로 대우한다고 가정해 본다.

이 경우에 다국적기업은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A국과 B국의 세법은 거주기업으로 하여금 국내그룹의 세무신고를 국내외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그룹을 단일 납세자로 통합하여 신고하도록 허용한다고 가정할 때, C국 소재 다국적기업이 손실을 입고, A국과 B국 기업은 이익을 내고 있다면 C국 소재 다국적기업은 A국과 B국 기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따라서 동일 그룹 내 일부기업의 손실에 대해 그룹전체로 볼 때는 두 번 공제의 이중혜택을 보는 셈이 된다.

위의 경우와 달리 이중국적 상태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소재국별 세무신고 규정이 다를 경우는 기업별 소득의 규모, 그리고 소재 국별 세율차이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차익거래를 선택하여 실행하게 된다. 이 경우는 아주 흔한 사례에 속한다.

다. 미국과 일본의 최초 할인발행 채권

이 유형의 요점은 채권발행자의 이자비용 귀속시기와 채권보유자의 이자소득의 수익인식 시점이 다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이다(Ring 2002, p.97). 당초 미국은 최초 할인발행 채권(original issue discount : OID)의 이자소득 과세기준을 보유자에게는 채권만기일에 인식하였으나 발행자의 이자비용 손금산입은 당해 연도에 처리하였다. 그러나 1962년, 1982년 및 1984년 세 차례에 걸쳐 세법을 개정하여 채권의 내부수익률을 반영하여 만기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할인발행 채권(OID)의 차익거래 기회는 개정 전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인식기

준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된다. 일본의 세법에서도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세무처리 됨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서 할인발행 채권(OID)을 발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채권발행자는 당기에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 국내의 채권보유자는 만기에 이자소득을 인식하여 과세이연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라. 혼합형 기업

혼합형 기업(Hybrid Entities)의 유형은 앞에서 살펴본 이중국적 기업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혼합형의 경우에는 각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각각 독립적 인격의 법인으로써 관할국의 법을 적용 받는 다국적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한 국가내의 법인이 타국에 지점내지 사업체단위를 설립하여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가 사업체단위로 두 국가의 세법에 의해 상이한 대우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사업체의 분류방식에 따라 차익거래 기회가 무한히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한 사업체단위를 지점으로 인식하는 반면 외국에서는 법인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미국은 1997년 1월 1일 사업체 분류방식에 관한 “Check - The - Box”¹⁰⁾규정을 새로이 발효하여 기존의 사업체 분류를 단순화함에 따라 수많은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되었다. 미국의 국세청과 재무부는 종전 규정 하에서도 사업체의 분류를 자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혼합형사업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대규모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5. 국제조세리스 특수형태

가. 개요

국제조세리스(Cross - Border Tax Lease)는 두 개의 국가가 상호간 세법상 차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자산을 중복소유하고 각각 감가상각 하는 방식(Double Dip Lease)으로 일반 국내 간 리스와 달리 레버리지 효과에 의한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도의 국가 간 리스기법으로서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의 구체적 사례이다.¹¹⁾

10) Treasury Reg. §301. 7701-2~3(as amended in 2001) 미국의 사업체분류방식이 1997.1 제정되기 이전에는 6가지 요인 테스트를 하였으나 납세자의 불만도가 심해 융통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모든 외국기업은 국내 기업체규정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개정규정에 열거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이나 한시조직(파트너십 또는 지점)을 스스로 선택토록 개정함으로써 혼합형기업의 잠재적 차익거래 기회가 촉진되었다.

11) 리스거래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구분을 다르게 했을 때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No Dip)가 있을 수 있고,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감가상각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Sub Lease 를 했을 경우에 그 Sub Lessee도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한 자산을 놓고 세 번 감가상각하

통상적으로 고가의 운송, 통신, 첨단 IT 설비자산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금융수단은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는 방법이 관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금융 절차 대신 리스제도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국제조세리스제도는 단순히 국내의 리스계약에서는 얻을 수 없는 조세혜택을 국가간 리스거래로 발전시킬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국가간 조세차익거래 형태로 국제조세리스를 선호해 오고 있는 금융기법이다.

이러한 국가간 리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으로는 첫째, 임대인은 설비자산의 소유권에 기인한 감가상각과 거래구조상 레버리지리스¹²⁾형태로 투입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세금절약 혜택(Tax Benefit)을 누리게 되고, 그 혜택을 「리스료 감면」 또는 「선지급 현금」의 형태로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현금차입으로 설비를 구매하는 것보다 국가간 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설비를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는 경우(Tripplle Dip)가 생길 수 있다(IFA, “Cross Border Leasing에 대한 과세”. 「IFA논집」, 1991, 10).
12) 레버리지 리스(Leveraged Lease)는 금융리스의 한 종류로서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등 조세상 혜택을 확대하고 리스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거래구조를 첨가하는 리스이다. 통상 조세리스(Tax Lease)라고도 하며 조세차익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특수형태의 리스구조이다. 레버리지리스는 원래 미국정부가 1962년 투자촉진을 위하여 설비 투자액의 7% 범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 ITC)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사업성격상 거래의 설비투자가 요청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게 소득이 충분한 리스회사가 설비를 리스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대신 받고 그 대가로 리스료를 낮춤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로 개발되었다.

그 후 점차 투자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하여 투자액 규모가 큰 설비를 취급하게 되었으며, 전체 투자자금을 하나의 리스사가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금원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제3의 투자자를 거래에 끌어들이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레버리지리스에서는 통상의 직접리스와 달리 임대인이 두 종류이다.

즉, 리스물건의 소유자(Owner Trustee)와 단순히 수익을 위한 자금투자자 집단(Owner Participant) 및 금융공여자(Debt Provider)로 나누어진다. 자금투자자 집단은 리스물건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자하고 이 물건의 소유주가 됨으로서 감가상각이나 투자에 따른 절세혜택을 향유하며, 동시에 절세혜택의 일부를 리스료를 인하하는 형태로 임차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주는 구조가 핵심이다. 이 경우에 자금투자자 집단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목적법인(SPC)이 법률상 리스물건의 소유자가 되며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또한 자금 투자자 집단은 주로 은행, 금융회사, 제조업체의 금융자회사, 기관투자자로 구성되며, 통상 리스물건 원가의 20~50%만 조달하고 100%투자와 같은 조세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를 갖게 되고 위험부담도 20~50%만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효과는 구입자금 전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감세혜택, 투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향유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공여자는 리스물건 소유자가 리스물건 취득에 필요한 자금 중 자금투자자집단이 제공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공여하는 당사자로서 주로 상업은행(Commercial Bank)들로 구성되며 리스물건에 대한 선 순위 담보권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임차인도 설비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조세리스구조에서는 임차인도 임대자산을 세법상 중복소유할 수 있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설비를 감가상각(Double Dip)하면서 리스로 감면 또는 추가적 현금수입 창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국제조세리스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산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나 이와 다른 사례가 있다. 즉, 기존 국내 보유자산을 외국에 실물자산 이동없이 서류상으로 역수출(리스계약)을 하고 국내에서 고유업무에 사용수익을 하면서도 상당한 효익을 얻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거래는 국내 간 리스의 세금 이전효과보다 국가 간 리스(수입)가 세금효과를 더 증가시켜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수출형 국가간 리스는 수입형보다 기존 보유자산의 금융 및 수익창출기능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석이조의 유용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의 중복소유

국가 간 조세리스가 성립하는 이유는 중복소유에 의한 이중상각이 가능하고, 이중상각은 바로 소유권에 관한 국가별 인식 차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 조세리스 형태로 차익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이 소유권(Tax Title)에 관한 국가 간 법제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정운오·고종권 2007, 85).

즉, 조세법 해석상의 소유권 개념(Ownership Status)은 국가별 정책목적과 법형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 통상 “법적인 소유권(Legal Entity)”과 “경제적 소유권(Economic Entity)”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과 해석이 가능한 국가(구체적으로는 법률적 관할지)간에 국가 간 리스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를 중복소유에 의한 이중감가상각 리스(Double-Dip Lease)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법적 소유권이라 함은 보유 자산 및 설비에 대한 법률적인 지배를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권리(Tax Title)를 보유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경제적 소유권이라 함은 법적인 소유는 무시하고 자산설비의 소유를 통한 운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효익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권리의 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차이의 배경은 법률적 형식을 존중하는 관습법을 따르는 국가와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대륙법 국가가 세법상 법적형식을 달리하기 때문인데, 자산소유에 따른 조세혜택(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을 두 당사자가 모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차익거래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조세리스는 리스자산에 대한 보유자(임차인) 통제권이나 거래형태에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III. 영국의 조세차익거래 규제제도

1. 영국의 규제제도 개관

영국은 국제조세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서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세법규제를 강화시킨 국가이다. 영국의 세무당국이 조세차익거래에 기반을 둔 기업의 조세회피계획을 억제하고자 한 것은 지난 1992년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영국의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 HMRC)은 다국적기업들이 혼합형 채권을 활용하여 국가 간 영구채권 및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배당소득으로 전환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하여 영국 측의 배당공제를 부인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어서 영국, 미국, 호주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조직된 OECD내의 태스크포스팀(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과 조세회피방지대책의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4년에 재정법(Finance Act)을 혁신하여 부가가치세 분야의 특정 세무거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계획에 대한 사전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Tax Avoidance Disclosure Rule : TAD rule)을 새로이 시행하였다.¹³⁾

이 조치는 세무관련 거래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신규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세무당국에 해당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취지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국세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운영결과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거래구조가 영국 세무당국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¹⁴⁾ 이에 대한 대책을 Technical Note(국세청) 또는 Pre-Budget(재무부)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수시로 시장에 공시되고, 소정의 입법절차에 따라 의회(상원과 하원)의 승인과 여왕의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 세법규제가 과거와 다른 점은 세무당국의 후속적인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후속입법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거래에 소급적용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새로운 거래구조가 세무당국에 보고된 후에는 납세자가 그 거래구조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3) Finance Act 2004 (2004.8.1) 영국의 국세청은 2002년도부터 산하조직으로 조세회피방지단(AAG)을 설치하고, 이 단체로 하여금 OECD와 협력하여 조세차익거래를 포함한 모든 세무거래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내부작업을 시도해왔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에 대한 공식적 규제가 사실상 강화되었다(Boyle 2005, 533).

14)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영국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조세회피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영국 정부는 이렇게 보고된 절세계획의 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일부분 통계치를 공개¹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용성을 인정하여 2005년에는 신고의무화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특정 조세차익거래에 대하여는 조세회피행위 가능성에 관한 내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조세회피성 세무거래의 통제를 시작하였다.

2. 시장의 제약

한편, 국제조세리스를 취급하는 영국의 조세차익거래 시장도 세법상의 규제에 영향을 받아 시장마찰과 제약이 상당히 존재한다. 현재는 대형선박을 중심으로 조세리스시장이 활발하지만 과거처럼 활성화되고 있지는 아니하며, 새로운 리스거래를 추진할 때는 재정법(FA)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 시장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국에서의 국제조세리스 계약은 다른 국가와 달리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약종료 전에 세법규정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소급적용토록 조건화됨으로써 계약당사자는 세법변동에 따른 계약상의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행이 영국 조세리스의 최대 취약점에 해당한다.

3. 세법규제

영국이 이번에 시행한 조세개혁은 모든 조세회피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특정 세무거래(조세차익거래를 포함)는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사전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세법규제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평가된다.¹⁶⁾

이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조세차익거래가 조세회피 심사기준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입법절차에 따라 조세차익거래가 포함된 특정 세무거래를 조세회피거래의 범주에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추가 입법조치를 매년 연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사전신고 및 공개제도(TAD Rule)의 내용과 절차, 영국 국세청의 조세회피 심사기준, 그리고 이러한 심사기준에 따라 문제가 된 특정세무거래를 어떻게 규제해

15) 2008년 10월 30일 현재 직접세분야에 1,793건이 신고되었다(HMRC Statistics 참조).

16) 2004.3.17 영국 재무부는 Budget 2004를 발표하고, 조세회피문제를 다루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공공 서비스 투자와 조세제도 통합을 위한 세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공개제도를 도입한다고 재무장관이 특별발표를 하였다. 투명성 개선, 계획적 조세제도 남용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한 회피계획을 고안하고 시장화 하는 자에게 공개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부가가치세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연매출 60만파운드(3억원)이상, 연매출 1천만파운드 기업이 부가가치세 절세계획과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세무거래가 공개대상이다. 이 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의 세무당국과 공동으로 검토해왔으며, 전문가,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나가는지를 알아보고, 영국의 국세청이 특정거래로 지정하여 심사한 거래 중에서 국제조세리스의 사례가 절차적으로 규제조치 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입법절차

먼저 영국정부가 조세회피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취하게 되는 절차적 과정으로서 통상적인 입법절차와 입법체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영국의 입법체계는 크게 3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입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나 이해관계자가 법률초안(Draft Bill)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론화과정이 끝나면 법률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되며¹⁷⁾, 심의가 완료된 법률안(Bill)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여 국왕(여왕)의 최종재가를 받게 된다. 이로써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되고,¹⁸⁾이를 여왕이 교서(Queen's Speech)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을 총칭하여 Law라고 한다.¹⁹⁾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영국정부는 조세회피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재정법 (Finance Act 2004)을 공포한 이래,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및 2008년에 걸쳐서 매년 재정법을 개정하고 있다. 재정법은 조세회피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 및 조세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개정하며, 해당 법률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조항을 변경시킨다.

17) 공론화 과정은 사전신고를 받은 세무정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세무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이 기술설명서(Technical Note)나, 재무부의 예산보고서(Pre-Budget, Budget)를 통해 공개 발표하고 수렴된 의견을 참고로 입법조치에 착수 한다.

이를 법률안(Bill)이라 한다.

18) 이때 법률(Act)로서 성립한다.

19) "A Bill is not an Act of Parliament. This is what a Bill becomes if approved by a majority in the House of Commons and the House of Lords, And formally law, enforced in all areas of the UK where it is applicable." "A Bill is a proposal for a agreed to by the reign monarch (known as Royal Assent). An Act of parliament is a new law, or a proposal to change an existing law that is presented for debate before Parliament. Bills are introduced in either the House of Commons or House of Lords for examination, discussion and amendment. When both Houses have agreed on the content of a Bill. It is then presented to the reigning monarch for approval (known as Loyal Assent). Once Royal Assent is given, a Bill becomes an Act of Parliament and is law."(The United Kingdom Parliament) ;

[http : //www.parliament.uk/about/how/laws/new-laws.cfm](http://www.parliament.uk/about/how/laws/new-laws.cfm).

[http : //www.parliament.uk/about/how/laws/acts.cfm](http://www.parliament.uk/about/how/laws/acts.cfm).

[http : //www.parliament.uk/about/how/laws/bills.cfm](http://www.parliament.uk/about/how/laws/bills.cfm)

[http : //www.parliament.uk/about/how/laws/draft.cfm](http://www.parliament.uk/about/how/laws/draft.cfm).

나. 사전신고 및 공개 제도

(1) 개요

재정법은 2004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사전신고 및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특정 세무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2004년 8월 1일부터는 고용(Employment) 및 특정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s)부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어서 2005년 8월 1일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인지·토지세(Stamp Duty Land Tax), 2006년 8월 1일에는 소득세(Income Tax), 법인세(Corporation Tax) 및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2007년 5월 1일에는 국가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을 대상으로 신고의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기업의 조세회피계획과 연관된 특정 세무거래와 해당 거래의 운용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납세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조기에 얻고자 하는 것이다.²⁰⁾ 이렇게 수집된 세무정보는 영국 국세청 내 전문가그룹으로 조직된 조세회피방지단(Anti Avoidance Group : AAG)에서 심사기준에 의해 조세회피 혐의를 판단하고, 이 결과를 조세회피방지 입법을 위한 의회와 세무조사 업무를 위한 세무당국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게 된다.²¹⁾

즉, 조세회피계획과 실행방식에 대한 정보를 세무당국이 조기에 획득하여 조세회피위험을 평가하고, 회피방지를 위한 입법행위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누가 그 계획을 이용하는지를 파악하여 세무조사업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조세회피계획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세무당국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2) 신고대상 세무거래

FA 2004 및 FA 2006에서 요구하는 신고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²²⁾

첫째, 세무거래를 통해 특정인이 조세혜택을 향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둘째, 이러한 조세혜택이 해당거래의 주요한 수익원 또는 수익원 중의 하나에 해당되며, 셋째,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특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세무거래(Hallmarks)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정 세무거래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7가지의 거래로 정하고 있다.

- ① 경쟁사업자로부터 비밀유지를 원하는 거래

20) HM Treasury, Budget 2004, 2004.3.17.

21) HM Revenue & Customs, Anti-Avoidance Group : Disclosure,
<http://www.hmrc.uk/avoidance/aag-disclosure.htm>

22) HM Revenue & Customs, 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http://www.hmrc.gov.uk/aiu/summary-disclosure-rules.htm>.

- ② 세무당국으로부터 비밀유지를 원하는 거래
- ③ 할증료수입을 합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거래
- ④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거래
- ⑤ 표준화된 조세금융상품 거래
- ⑥ 손실거래
- ⑦ 특정 리스거래

(3) 신고절차 및 기한

상기 특정 세무거래와 같이 신고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거래구조에 대하여, 거래의 주선자(Promoter)는 해당거래가 실행 가능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세무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세무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첫째, 거래의 주선자가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둘째, 거래의 주선자가 변호사이거나 법적 특권이 적용되는 경우

셋째, 거래의 주선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신고가 완료되면, 세무당국은 해당 세무거래별로 8자리의 식별번호를 주선자에게 부여한다. 법 규정에 따라 주선자는 이러한 식별번호를 해당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용고객은 세금환급을 신청할 때 또는 조세회피방지단이 지정한 서식(AAG4)을 작성할 때 부여된 식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거래(Hallmarks)를 직접 고안하여 실행하는 납세자는 해당거래의 실행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거래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국의 세무당국은 신고된 세무거래에 대하여 국세청 내에 설치된 조세회피방지단의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입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4) 벌칙

공개의무(Disclosure)를 위반할 경우 기본적으로 5,000파운드 외에 1일당 600파운드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2007년도 재정법은 재무부에게 특정의 환경에서 높은 벌칙(penalty)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으며, 고객들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 거래 주선자들에게도 최대 5,000파운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기본으로 100파운드의 가산세에다가 계속 누락할 경우 500파운드까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다른 세금과 달리 신고를 해태할 경우 회피계획으로 절감된 세액의 15%를 가산세로 내고 특정 세무계획(Hallmarked Schemes)은 5,000파운드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협력의 담보로서 신고불이행시의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의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 조세회피방지단의 역할 및 심사기준

조세회피방지단은 현재 영국 국세청 내에 설치된 특별조직으로서 2002년에 영국 관세청장에 취임한 Chris Tailby(전 PricewaterhouseCoopers의 파트너)가 영국의 국세청과 통합된 2004년 12월에 국세청의 반조세회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세무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국세청장과 재무장관의 자문과 함께 대응방안 및 전략수립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조세회피방지단은 OECD의 공동국제조세회피방지정보센터(JITSIC)와 파트너로 일하고 있으며, 특정법규²³⁾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이 있는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유권해석(Clearance)을 담당하고 있다.

가. 조세회피 심사기준

조세회피방지단은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세무거래가 조세회피거래로 인식될 가능성(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심사지침 항목(Signposts라고 함)을 구체적으로 예시화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심사기준의 제정목적 및 배경과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이드라인

조세회피방지단의 조세회피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납세자가 추진하는 절세계획(Tax Planning)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회피위험이 농후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심사기준을 안내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국세청은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위험요소들을 확인하여 납세자들의 조세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세무행정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국세청의 고객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세와 관세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무거래를 할 때 조세회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성의 사례들을 조기에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 하려는 국세청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2) 심사기준

세무당국에 신고된 특정 세무거래의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심사할 때, 국세청의 심사관이 세밀하게 관찰해야 할 여러 가지 위험성 항목이 있다. 조세회피방지단은 본 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판명된 거래나 계약에서 공통된 특징들을 모아 작성하였으며, 시

23) Finance Act 2004, Part7, 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306-319.

24) HMRC : guidance from anti avoidance group, AAG, list of signposts
(<http://www.hmrc.gov.uk/avoidance/aag-risk-assessing.htm>).

장이 발전하고 납세자의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세부기준 항목의 회피위험성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지침 내에 망라하지는 못했다.

본 심사기준을 토대로 조세회피방지단은 특정 세무거래를 심사하는 조사담당자에게 해당 거래가 조세회피혐의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또한 국세청 차원의 조세회피 위험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절세계획상의 부당한 거래나 계약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함으로써 행정적 보조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든 거래나 계약이 심사기준에서 열거하는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정밀조사를 통하여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며, 모든 절세행위를 회피성 거래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조세회피혐의가 없는 거래도 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한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단은 심사기준을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3) 세부기준 (조세회피 가능성 항목 : list of signposts)

위와 같은 조세회피방지단(AAG)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영국 국세청은 과거의 판례 및 세무조사 사례를 기초로 하여 조세차익거래를 포함한 특정세무거래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심사하는 세부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 항목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⁵⁾

- ① 경제적 실질이 거의 없거나, 절세결과가 납세자(또는 관련된 납세자 그룹)의 경제적 지위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나 계약으로서, 경제적 실질은 없으면서 선택적인 과세여건 중 유리한 쪽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환거래 적용의 남용사례. 구체적인 예로 Ramsay (WT) Ltd 대 CIR(54C101), 또는 University of Huddersfield(C-223/03)의 판례를 들 수 있다.
- ② 세전이익이 거의 없으면서 예상되는 세액공제나 감세를 통한 세후이익에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을 의존하는 거래나 계약으로서, 외국의 과세에 의해 발생된 세전손실을 상쇄하는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배당의 구매, 그리고 옵션 등과 같은 비과세 자산의 수익에 의해 보전 받는 인위적인 증권손실 등의 사례.
- ③ 법적 문서, 회계처리, 경제적 실질 또는 다른 관할지의 세무처리 등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나 계약으로서, John Lewis Properties Ltd 대 CIR(75TC131)의 판례와 같은 임대분할사례, 현금보너스를 배당으로 위장하기 위한 조건부 배분계획 사례. 예로서 CIR Co Cleary(44TC399) 또는 Devenhams(2005 EWCA Civ892)의 판례와 같은 계약, 그리고 지분이 하나의 관할지역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상대방 관할지역에서는 과세대상 수입이 아닌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25) HMRC : Guidance from Anti-Avoidance group(AAG), List of Signposts.
(<http://www.hmrc.gov.uk/avoidance/aag-risk-assessing.htm>).

- ④ 사업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또는 비과세 조건을 이용하여 거의 이익이 나지 않는 거래나 계약·구체적으로 BUPA Hospitals(C-419/02) 또는 Devenhams(2005 EWCA Civ892)의 판례와 같은 계약과 상업적 투자를 과장해서 세금손실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영화 제작계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⑤ 인위적으로 꾸며냈거나, 일시적, 미리 정하는 방식 또는 상업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수반하는 거래나 계약. 구체적인 예로서 IRC 대 Scottish Provident Institution([2004] UKHL 52 ; [2005] STC 15)의 판례에서 검토된 것과 같이 경제적 손실 없이 세금손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옵션의 조합, Furniss 대 Dawson([1984] A.C. 474) 및 Halifax and others(C-225/02) 판례와 같은 계약, 그리고 전 소유주가 소유권에 따르는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 상속세법상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고안된 인위적인 계약 등을 들 수 있다.
- ⑥ 영국세법상의 소득, 수익, 지출, 또는 손실 등이 영국 내에서 발생되거나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과 비례하지 않는 거래나 계약, 특히, 당해 거래나 계약이 같은 경제그룹 내에서 일어났거나, 가까운 당사자 간에 아니었으면 발생되지 않을 거래, 또는 경제그룹 전체로는 부가수익이 없는 거래 등. 예를 들면 소유권의 이전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과 무관하거나, 경제그룹 전체로 보았을 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구조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영국 내 소재 회사에서 세금이 적거나 없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의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 ⑦ 특정 거래나 계약을 대상으로 고안된 거래나 계약. 구체적으로 Section 91A EH는 91B FA 1996의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회수와 같은 효과를 갖도록 고안된 계약을 예로 들 수 있다.

IV. 영국의 조세차익거래 규제 사례 분석

여기서는 조세회피방지단이 조세회피 가능성(Risk)이 있다고 제시한 세부 심사기준(Signposts)에서 구체적인 예로 인용하고 있는 판례 등을 대상으로 중요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사례와 조세차익거래중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제리스 거래에 대하여 2008년도에 규제대상으로 입법 공시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Ramsay(WT) Ltd. v CIR(54TC101)

본 판례는 농업 관련 회사인 Ramsay Ltd. (“Ramsay”)가 특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거래의 차익에 대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거래구조와 관련된 조세회피 사건이다. 본

사건의 거래구조는 인위적인 비용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Ramsay는 동일한 금액의 대출계약 두 건을 거래 상대방과 체결하고, 한 건의 대출계약은 이자율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 한 건의 대출계약은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는 형태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 이러한 옵션이 Ramsay에 의해 행사될 경우에 두 건의 대출계약에 대한 실질가치는 초기 계약시점의 가치에 비해 각각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그 후 두 건의 대출계약은 매각되었으며, 각각의 대출계약 가치가 증가된 대출계약은 매각시점에서 자본차익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당시 세법상 과세가 면제된 반면, 가치가 감소된 대출계약은 매각시점에서 발생한 손실분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이 손금으로 인식되었다. 영국 세무당국은 이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계약의 자본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를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기회를 방지하고자 하였다.²⁶⁾

2. Gilt Strip Losses

본 사례는 영국 국채에서 파생된 무이표 채권인 Strip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조세회피 사례이다. Gilt Strip이란 영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자표(Coupon)와 원금(Principal)을 분리(Stripping)하여 발행한 채권으로서 만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 실질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거래의 구조는 인위적인 자본손실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투자자는 Gilt Strip을 매입한 후 채권가치의 절하를 목적으로 명목금액(예, 채권가격의 약1%)으로 동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발행하여 투자자 자신이 설정한 신탁에 부여한다.

그 이후, 투자자는 상기 옵션에 귀속되어 있는 Gilt Strip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초기 투자금과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자본손실을 인식하게 되며, 이 때 신탁은 보유한 옵션을 해당 Gilt Strip의 신규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기존 세법규정으로는 옵션행사에 따른 수취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의 FA 2003에서는 특정 할인채(Deeply Discounted Securities)에 대한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국채의 Strip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자본손실에 따른 손비 인정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Strip을 활용한 인위적인 자본손실을 활용하는 거래구조가 지속적으로 성행하였고, FA 2004에서는 매각시점에서 인위적인 자본손실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매각가치를 실제 시장가격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규정이 입법화됨으로써 더 이상의 조세회피사

26) HMRC : <http://www.hmrc.gov.uk/mamuals/nimmanual/nim04011.htm>.

<http://www.hmrc.gov.uk/mamuals/cg3manual/cg53423.htm>.

Taxationweb : <http://www.taxationweb.co.uk/tax-articles/general/the-ramsy-principle.html>

Tax Journal, LexisNexis, 2004.12.13. :

<http://www.freshfields.com/publications/pdfs/practices/external/mawsonscottishprovident.pdf>

례는 방지할 수 있었다.²⁷⁾

3. John Lewis Properties Ltd v CIR(75TC31)

본 판례는 렌트료의 팩토링과 관련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사건으로서, 기본적인 거래 구조는 특정 자산의 보유에 따라 일정한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특정금액을 일시에 수령(Lump Sum)하는 형태이다.

거래 구조상 자산의 통제권은 원래의 자산보유자에게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원래의 자산보유자가 제3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원은 차입금으로 인식되고, 상환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식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제3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차입금으로 인식되는 반면, 해당기간 동안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현금흐름은 익금산입에서 제외됨으로써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수익구조와 비용구조의 불일치를 통한 조세회피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세무처리는 제한되었다.²⁸⁾

4. BUPA Hospitals(C-419/02)

본 사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조세회피거래로서 법원판결에 의해 규제된 사건이다. BUPA는 사립 의료시설로서, 1998년 1월 1일까지 약품 및 인공 기관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영국정부는 세법을 개정하여 상기시점부터 해당 재화의 공급행위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세법으로는 해당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법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BUPA는 다양한 선지급 거래 구조를 고안하였으며, BUPA의 계열사이지만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 없는 회사들을 해당 재화의 공급자로 활용하였다. 소위 위장거래인 셈이다. BUPA는 이러한 공급자들에게 거래대가로 1억파운드에 부가가치세를 가

27) HMRC : <http://www.hmrc.gov.uk/manuals/cfmmanual/CFM5950.htm>

<http://www.hmrc.gov.uk/manuals/cfmmanual/CFM5950a.htm>

The 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Inland Revenue Disclosure form) :

<http://www.tax.org.uk/attach.pl/2479/1542/disclosureform%20s292.pdf>

28) HMRC : <http://www.hmrc.gov.uk/manuals/ctmanual/ctm36620.htm>

Tribunals Service—Finance and Tax Tribunals :

<http://www.financeandtaxtribunals.gov.uk/Documents/decisions/specialCommissioners/SPC00255.pdf>

British Property Federation (BPF) : <http://www.bpf.org.uk/pdf/17031/pub115107383913428-2.pdf>

Pinsent Masons : <http://www.pinsentmasons.com/media/1563071088.htm>

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 금액은 BUPA가 향후 50년 내지 100년에 걸쳐 매입할 수량에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이다.

본 사건에 대하여 영국의 세무당국은 경제적 실질이 없이 조세회피의 목적만으로 구성된 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본 건은 유럽최고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 ECJ)까지 제소되었으나,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대가의 지급시점보다는 실제 재화의 공급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을 판시함에 따라 결국 BUPA는 패소하게 된 조세회피 사건이다.²⁹⁾

5. 선박 등의 조세리스거래

2007년 12월 13일 영국 국세청은 조세회피계획의 사전신고 및 공개 규정에 따라 신고된 특정 설비자산(Plant and Machinery)의 리스거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 여부를 내부심사하여, 이를 공문화하는 절차로 기술설명서를 공표하고³⁰⁾ 입법절차를 거쳐 재정법을 개정하는 예고³¹⁾를 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리스거래의 과세규정

Finance Act 2006이 발효되기 이전의 특정 설비자산(선박 등)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수취 리스료 전액을 익금으로 처리하며, 임차인은 지급 리스료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Finance Act 2006 이 제정된 이후 특정 설비자산에 대한 리스거래 중 일부 거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현행의 금융리스 형태와 유사한 장기금융리스(Long Funding Lease : LFL)로 분류된다. 장기금융리스(LFL)하에서 임대인은 세무상 일종의 금융거래(대출 및 차입)를 한 것으로 취급되어 수취 리스료 중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의 경우도 지급 리스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29) HMRC : http://customs.hmrc.gov.uk/channelsPortalWebApp/channelsPortalWebApp.portal?_nfpb=true&_pageLabel=paseLibrary_ShowContent&propertyType=document&id=HMCE_PRODI_025280

The 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Tax Adviser May 2006) :

<http://www.tax.org.uk/attach.pl/4418/4526/014-016.pdf>

PricewaterhouseCoopers : <http://www.nl.pwc.com/extweb/bn/TaxNews.nsf/Public/SZ56437>

30) HMRC : Technical Note, Leased Plant and Machinery Anti-avoidance (2007.12.13).

31) HMRC : Leased Plant and Machinery ; Technical note and draft Finance Bill 2009 legislation (2008.11.13).

나. 조세회피 내용

조세회피계획의 신고와 관련하여 국제리스거래는 신고대상 특정 세무거래(특정 리스거래)에 해당함에 따라 법정기한내 거래내용이 세무당국에 신고가 되었다. 본 리스거래의 구조는 헤드리스(Head Lease) 및 서브리스(Sub-Lease)구조로서 중간임대인(Intermediate Lessor)의 경우 실제 경제적인 손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손실이 발생하는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세무상 손실로 조세혜택이 발생하는 원리는 리스거래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설비자산을 소유한 A가 해당 자산을 B에게 리스를 하고, 동일한 자산을 대상으로 B는 C에게 서브리스를 한다. 이때 B의 관점에서 헤드리스는 장기금융리스로 분류되지 않도록 구성하면 본 리스거래에서 A에게 지급하는 리스료 전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B의 관점에서 서브리스는 장기금융리스로 분류되도록 구성하며, 이에 따라 C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 중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익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B의 관점에서 헤드리스 조건에 따라 A에 지급하는 리스료와 서브리스 조건에 따라 C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무상 손실로 인식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거래의 불일치를 유발하는 사유에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유사한 형태의 6년 만기의 금융리스를 구성하면서, 헤드리스는 자본지출손비인정법(Capital Allowance Act 2001 ; CAA)의 section 70I에서 규정된 장기금융리스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단기리스(Short Lease조건 ; 5년 이하)로 구성하는 반면, 서브리스는 반대로 장기리스로 분류되기 위해 단기리스(Short Lease)로 구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계약일자를 헤드리스는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하였고(FA 2006의 입법이전이므로 장기금융리스로 분류되지 않음), 서브리스는 2006년 4월 1일 이후 신설된 세법규정에 따라 장기리스로 새롭게 구성한다. 즉, 유사한 형태의 헤드리스 및 서브리스를 체결함과 동시에 자본지출손비인정법(CAA)의 Section 70H를 통해 헤드리스의 임차인이 장기리스인 헤드리스를 비장기리스(non-long funding lease)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 규제 조치

상기 사례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사항으로 2008 Finance Bill에 포함된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³²⁾

첫째, 특정 설비자산에 대하여 비장기리스 형태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2007년 12월 13일 및 그 이후 시점에 장기리스형태의 서브리스(Sub-Lease)를 다시 체결하는 경우, 서브리스(Sub-Lease)상에서 수취하는 리스료는 전액 익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32) HMRC : Leased Plant and Machinery : Technical note and draft Finance Bill 2009 Legislation (2008.11.13).

둘째, 특정 설비자산에 대하여 비장기리스 형태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2007년 12월 13일 장기리스인 서브리스(Sub-Lease)상의 임대인인 경우, 서브리스(Sub-Lease)상에서 수취하는 리스료는 전액 익금으로 인식하되, 이러한 세무처리는 2007년 12월 13일 이후에 도래하는 리스료에만 적용된다.

셋째, 임차인이 장기리스인 서브리스(Sub-Lease)상의 임대인인 경우, 자본지출손비인정법(CAA)의 Section 70H를 통해 장기리스를 장기리스이외의 형태로 전환할 수 없다.

6. 우리나라의 적용방안

우리나라에서 국가간 조세차익거래의 규제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기준, 절차적 기준, 그리고 구체적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기준은 선언적으로 공개될 수 있고, 공개되는 경우 절차적 기준 및 입법적 기준과 적절히 융합되어 납세자들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회피가능성의 판단에 있어서 보충적 판단기준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차적 기준으로는 영국과 같이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조세정보를 조기에 획득하고, 구체적 기준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와 같이 특정한 요건, 즉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실질개념을 미충족하고 국내 세수를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등 규제대상 거래를 정하는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 규제기준을 제정·운용함으로써 합법성을 저해하는 조세차익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으로 미룬다.

V. 결론 및 한계점

세계 각국은 국제 비즈니스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촉진하고, 불리한 세제를 변경하는 등 독자적인 투자유인과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 상호간 조세제도의 불일치(Inconsistencies)와 상충(Tax-Law Conflicts)을 낳았고, 이러한 불일치 등은 합법적인 절세기회로 인식되어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Cross-Border Tax Arbitrage)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국가별로 고유한 정책목적과 다원화된 법제도 환경 때문에 모든 국가의 조세제도를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세제도의 불일치를 이용한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합법적인 조세차익거래에 고도의 금융기법이 개입되면서 조세회피거래와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현상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한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의 물줄기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소

지가 있는 오염된 국제거래에 대하여 세제상 규제조치를 취하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국제거래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합법적 절세행위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기준의 마련과 조세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조세차익거래 규제제도를 소개하고, 주요 조세회피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조세회피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1992년에 국제 영구채권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지난 2004년에는 조세차익거래와 조세회피를 통제하기 위하여 재정법에 공개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2005년도에는 보다 강화된 재정법 No.2를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최근에 오·남용적 절세계획을 규제하기 위한 공동국제조세회피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회원국 간 국제적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국가단위의 세법적 규제와 간섭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실무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행정 절차적 측면으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국제조세 마찰이 없이 국가 간 조세차익거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규제제도와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조세차익거래 규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 간 조세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된 조세차익거래 규제 기준 및 제도의 제시는 미래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07. 「국제거래 관련자료」.
- _____. 2004. 「조세조약-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 박정수.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 박정식. 1988. 「현대투자론」. 다산출판사.
- 서희열. 2008. 「세법총론」. 세학사.
- 서희열·성용운. 2008. 「법인세법강의」. 세학사.
- 안종석. 2006.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안종석·최준욱. 2003.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오 윤. 2003. 「금융거래와 조세」. 한국재정경제연구소.
- 이준규·김갑순. 2008.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주)영화조세통람.
- 정운오. 1997. “Scholes and Wolfson의 패러다임에서의 세금재정”. 『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 131 - 153
- 정운오·고종권. 2007. “D회사의 국제조세리스 : 세금 재정거래 사례”. 『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 79 - 104.
- Boyle, Mark. 2005. “Cross -Border Tax Arbitrage -Policy Choices and Policy Motivations”. British Tax Review. No.5 : 527 - 543
- OECD, 1987,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 Issues in International Taxation.
- _____, 1998, “Harmful Tax Competition : An Emerging Global Issues,” C/MIN(98)13ANN.
- _____, 2000., “Towards Global Tax Co -operation, Report to the 2000 Ministerial Council Meeting and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 Progress i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
- _____, 2003, “Progress since 2000 in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AFPE/CFA(2003)32/REV1/CONF.
- Ring, Diane M.. 1994. “One Nation Among Many : Policy Implications of Cross -Border Tax Arbitrage”.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44 : 79 - 175.
- Scholes, M.S. and M.A.Wolfson. 1992.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 [http : //www.hmrc.gov.uk](http://www.hmrc.gov.uk)
- [http : //www.tax.org.uk](http://www.tax.org.uk)
- [http : //www.bpf.org.uk](http://www.bpf.org.uk)
- [http : //www.parliament.uk](http://www.parliament.uk)
- [http : //www.financeandtaxtribunals.gov.uk](http://www.financeandtaxtribunals.gov.uk)
- [http : //www.freshfields.com](http://www.freshfields.com)
- [http : //www.pinsentmasons.com](http://www.pinsentmasons.com)
- [http : //www.nl.pwc.com](http://www.nl.pwc.com)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Tax Arbitrage - Centered on the Cases of England -

Seok, Myung Bok* · Suh, Hi Youl**

— <Abstract> —

Each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carried out independent investment incentives and deregulation policy such as promoting the capital transfers between countries and changing disadvantageous tax system to take superio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market. As a result, it caused the inconsistencies and tax-law conflicts between the tax policies of each country. These inconsistencies were recognized as opportunities to cut tax and caused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s between countries.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to unify all the taxation policies of each country because of the unique political goals and diversified legal environment of each country. But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 using the inconsistency of the taxation policies is expected to continuously occur in the future, and especially, as the advanced financial techniques are applied to the legal tax arbitrage, the phenomenon of the distinction from tax evasion becoming ambiguous is expected to increase remarkably. Therefore, to respect the flow of the market based on the liberal economic principle, and to keep the stream of consistent taxation policy, we need to provide appropriate restriction standard and to flexibly operate the taxation policy to take restrictive taxation actions on the controversial contaminated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pure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are not contaminated to be considered as regular natural legal tax reduction activities.

Since England is directly regulating the tax evasion transactions ahead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will look at the tax arbitrage regulations and major tax evasion cases of England. Specifically, England, starting with the cross-border perpetual note rules in 1992, newly enacted the disclosure regime in the “Finance Act” in 2004 to restrict the tax arbitrage and tax evasion, and executed more intensified Finance Act No. 2 in 2005. Recently, the national level taxation restrictions and interferences on the tax arbitrage are expanding, as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ECD, also installing the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JITSIC) to restrict the erroneous and abusive tax reduction plans, and actively promoting the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 Ph.D. Science in taxation, Hipluscard co.

** Professor, Department of Tax Science Kangnam Univers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need to take approaches, by providing systematic standard in political, practical, and administrative perspectives to rationally restrict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s, and to achieve this, the international taxation environment with reference to the regulations and cases of England and the advanced tax arbitrage regulation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shall be studied continuously.

<Key words> Tax arbitrage, Tax avoidance, Tax deduction, Regulation standard for tax arbitrage transaction